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35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서영교·윤준병·서영석

김준형 • 이건태 • 김병기

이성윤 · 강유정 · 박홍배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20 18년~2020년). 그 중 절도·폭력·지능범죄가 가장 많았고, 강간·추행도 매년 1,500건 내외에 달함.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신고된 허위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로 10명 중 7명 수준이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살인, 성폭력 등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일부 청소년은 이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또, 소년이 살인이나 치사,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33조, 제38조, 제51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14세"를 "13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단, 예비, 음모 및 미수범은 제 외한다).
 -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
 - 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 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

제7조제2항 본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6개월"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년"을 "10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51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년의 처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죄를 범한 소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소년"이란 <u>19세</u> 미만인 자를	<u>1</u> 8세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	
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u>.</u>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
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고) ① (현행과 같음)
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	
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2
를 한 10세 이상 <u>14세</u> 미만인	<u>13세</u> -
소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다만, 예비, 음
	모 및 미수범은 제외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한 범죄(종범은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생 략)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 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 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 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 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 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외한다)

- 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의 특정강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 16조까지의 죄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 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현행과 같음)

2
<u>18</u>
<u>All</u>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

- ④ (생 략)
- 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의 보호기간은 <u>6개월</u>을 초과하 지 못한다.
-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의 보호기간은 <u>2년</u>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⑦ (생략)
-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 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u>19세</u>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 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5년
<u>(6)</u>
·
<u>10년</u>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u>18세</u>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이송)
10 มไ
<u>1</u> 8세

______.